

#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64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3월 31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대상 확대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 요건 규정을 일부 삭제하여 협의절차 단축(안 제27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환경영향평가법」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원안동의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- 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
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
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 
검토의견: 해당없음

라. 기타

(1) 입법예고(2025. 2. 13. ~ 3. 5.) 결과: 의견없음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: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김정학 (☎2133-3546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의 제목“(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)”를“(협의절차 등에 관한 특례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”을 “제29조제2항에 따른 심의기준을 충족하는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경우 평가서”를 “평가서”로, “협의 절차”를 “협의절차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7조(협 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) ① 시장은 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면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p> <p>1. 협의 또는 재협의 대상사업의 규모가 별표 1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사업</p> <p>2. 대상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저감대책이 충분히 세워진 경우</p> <p>3. 제29조제2항에 따른 심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</p> <p>② 사업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경우 평가서 초안을 제출할 때에 협의 절차의 면제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27조(협 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) ① ----- 제29조제2항에 따른 심의기준을 충족하는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② ----- 평가서 ----- ----- ----- 협의절차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#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해당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## 3. 미첨부 사유

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 요건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

## 4. 작성자

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행정5급 김정학(02-2133-3546)